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2 선고 2019가단20725(본소), 2020가단6978(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김민규

피 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C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33,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0. 31.부터 2011. 11. 8.까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차용액 50,000,000원, 차용기간을 2011. 11. 8.부터 2013. 11. 7.까지로 한다.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로 한다'는 내용의 2011. 11.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고, 설령 차용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을 받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2012. 7. 25.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상당액을 송금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8,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던 점, ② 피고 회사에서 입금된 돈의 일부는 원고가 출금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2012. 9. 27.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1.경부터 2015.경까지 87,416,7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120,682,7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초과 변제한 33,26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초과변제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피고 C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